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지 방 공 무 원 교 육 훈 련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획일적으로 80시간 이상(5급 공무원 중 직위 보유자는 50시간 이상)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여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80시간 이상(5급 공무원 중 직위 보유자는 50시간 이상)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감염병 대응 업무의 장기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80시간 이상(5급 공무원 중 직위 보유자는 50시간 이상)으로 하되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훈련 이수시간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) [별표1] 제2호의 개정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시간 관련 기준의 변경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승진 및 보직 관리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51